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//www.mke.go.kr
'11년 12월1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불공정무역조사팀장 윤종욱(2110-5581), 김오룡 사무관(2110-5582)	

무역위, 영업비밀 침해물품 유통차단 조사 강화

-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,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·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임

○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, 영업비밀 침해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·유통되는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

○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*와 함께 과징금**을 부과할 수 있어, 침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* 수출입·판매·제조행위 중지, 폐기처분, 정정광고, 사실 공표 등
**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% 이내

○ 또한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,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

* 경찰청 수사를 통한 사법적 제재는 통상 1년 이상 소요

《가상 사례》

○ 독자적 이륜차 엔진기술을 보유한 국내 A사의 전직 임원이 엔진 제조기술을 해외의 B사로 유출시켜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출시, 양산에 성공해 국내로 수입

○ 경찰은 유출혐의자에 대한 수사완료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, 외국산 오토바이가 지속적으로 국내로 수입 및 판매되어 A사의 매출이 대폭 감소

○ 이에,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통해 해당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를 명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

□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바,

○ 먼저,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침해물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,

- 향후 경찰청에서 검찰 송치단계의 침해사건을 통보받아, '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임

□ 또한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*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향후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임

* 중기청의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결과, 최근 3년간 기업의 13.2%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, 3년간 누적 피해규모는 5조원 수준
(업체당 건당 평균 피해규모는 15억원)

○ 먼저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, 업종별 단체를 통한 침해신고 접수 지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·홍보를 강화하고,

- 피해기업의 조사신청 시에는 변호사,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

○ 또한 변호사, 변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'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 활성화 자문단'을 발족하여 운영할 계획임

첨 부 : 1. 영업비밀의 개념
2.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3. 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」 관련 규정

참고 1 영업비밀의 개념

□ 영업비밀의 개념 및 성립요건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)

○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(비공지성)
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(경제적 유용성),
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(비밀관리성)
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**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**

- 기술정보 : 생산 및 제조공정, 제조방법 등
- 경영정보 : 마케팅 전략, 고객 리스트, 기업의 기본계획 등

01	+	02	+	03	=	04
비공지성		경제적 유용성		비밀관리성		영업비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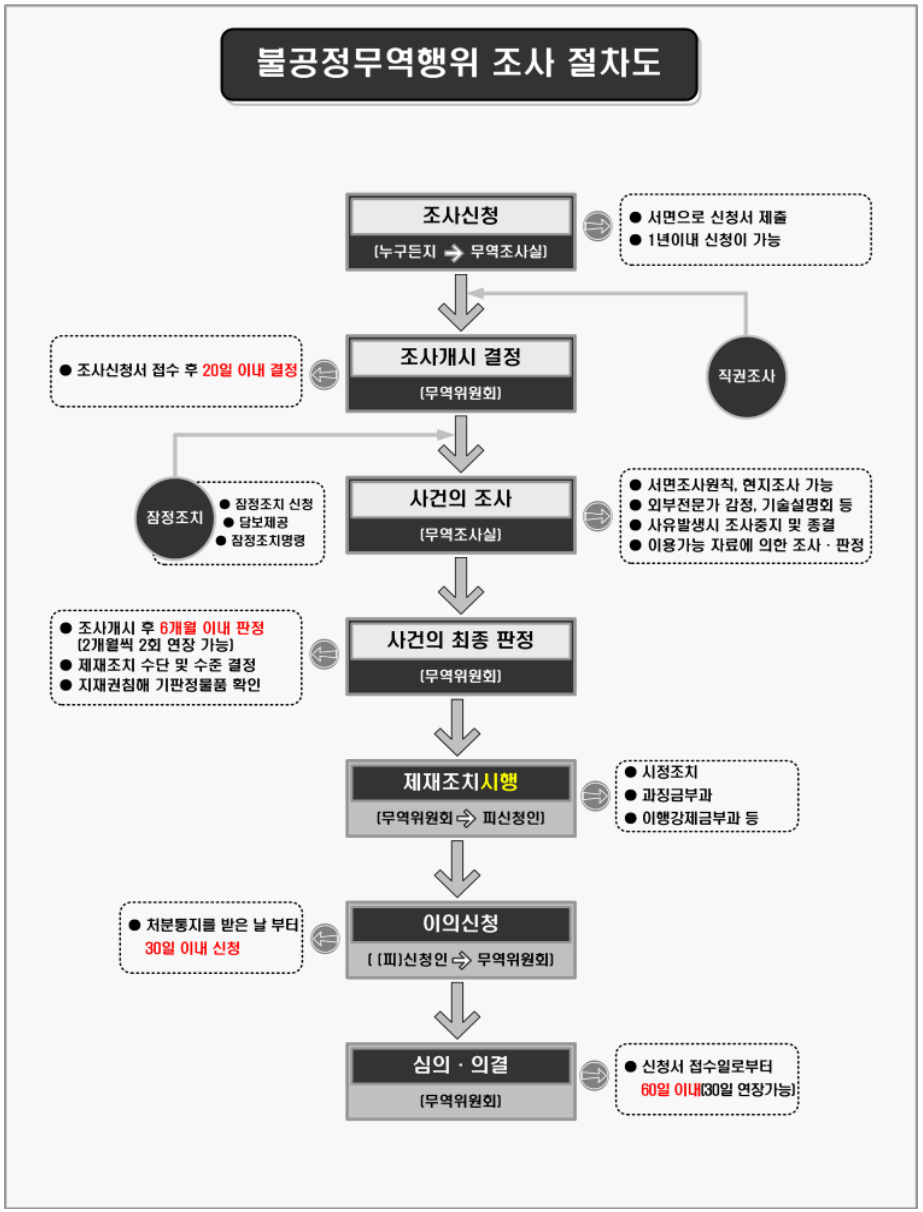
□ 영업비밀 침해유형 및 구제수단

○ 침해유형 : 영업비밀을 부정취득·사용·공개하는 행위,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·중과실로 취득·사용·공개하는 행위, 선의취득 후 악의·중과실에 의한 사용·공개 행위, 영업비밀을 부정공개·사용하는 행위,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·중과실로 취득·사용·공개하는 행위, 선의취득 후 악의·중과실에 의한 사용·공개행위

○ 구제수단

- 민사적 구제 :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 신용회복청구권 등
- 형사적 구제 : 영업비밀을 침해행위자는 누구든지 처벌하며, 미수, 예비,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

참고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

참고 3 **관련 규정** (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)

제4조 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불공정무역행위"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(實用新案權)·디자인권·상표권·저작권·저작인접권(著作隣接權)·프로그램저작권·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**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**등(이하 "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"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 가.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**국내에 공급**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**수입**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**국내에서 판매**하는 행위

 나.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**국내에서 제조**하는 행위

제10조 (시정조치)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----

1. 해당 물품등의 **수출·수입·판매·제조행위의 중지**
2.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**폐기처분**
3. 정정광고
4.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5.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제11조 (과징금)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**100분의 30**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**5억원**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40조 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
3. 제10조제1항에 따른 **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**